

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고객님 안녕하십니까?

저희 휴먼빌 가족이 되신 것에 감사드리며, 항상 고객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중도금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진행하실 고객님은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[일신건영\(주\) 홈페이지](#)를 통하여 필히 사전 예약 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- 아 래 -

▣ 중도금대출 신청 안내

| 구 분 | 내 용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행사 일정 | 2026년 4월 2일 (목) ~ 4월 4일 (토) [3일간 진행] | |
| 행사 시간 | 오전 10:00 ~ 오후 4:00까지 (점심시간 12:00~13:00) | |
| 행사 장소 | ▶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견본주택 (주소: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628) | |
| 예약 방법 | ▶ 일신건영(주) 홈페이지 내 온라인 예약 | |
| 예약 일시 | ▶ 3월 23일(월) 10:00 ~ 4월 1일(수)까지 예약 가능 (※유선상 예약 불가) | |
| 대출 기관 | 전북은행 중부종합금융센터 차장 김수화, 대리 박오섭, 대리 박희원 | ☎ (042)824-9521(내선: 121,131,132) |
| 기타 문의처 |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견본주택 | ☎ 1522-2445 |
| 대출 범위 및 유이자안내 | ▶ 분양대금의 60%(1차~6차 중도금) 이내 → 중도금대출 후환제 유이자 는 입주지정기간 최초 시작일 전일까지만 대납하며, 입주시 잔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고,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턴은 고객님께서 직접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.(선대납 후정산) | |
| 구비서류 | ▶ 구비서류 미비 시 중도금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, 첨부된 중도금대출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구비서류 (3월 21일 이후 발급분) 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| |
| 대출 관련 유의사항 | <p>① 중도금대출 신청 자서는 계약자 본인이 자필 서명하셔야 합니다. (대리인 접수 불가)</p> <p>② 공동명의 세대의 경우 모든 서류는 각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③ 견본주택 방문 전 계약자 명의 전북은행 입출금 통장을 미리 개설하시면 좀 더 빠르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.</p> <p>- 방법 1. 전북은행 입출금 통장 개설(담당영업점: 중부종합금융센터) ▷ 간편가입서비스 접속 https://m.jbbank.co.kr/P_M_BDT189321_01.act?seq=202603090300608&dvcd=01&skp=N&slf=99&dvcd2=03&dvcd1=0000</p> <p>- 방법 2. 전북은행 모바일뱅킹 가입(담당영업점: 중부종합금융센터) ▷ [쓱뱅크] 앱 어플 설치 및 로그인 완료</p> <p>④ 지정된 일정 내 견본주택으로 내방하시어 중도금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라며, 금번 대출신청 지정기간 이후에는 개별적 중도금대출 신청이 어려우므로, 정해진 기간 내에 중도금대출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⑤ 중도금대출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납부하시는 세대는 중도금 각 회차별 약정일자(분양계약서 참조)에 차질 없이 입금하셔야 하며, 또한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및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한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.</p> <p>⑥ 계약금 5%를 완납한 세대에 한해서만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, 계약금 중 미납금액이 있는 세대는 불가합니다.</p> | |

집단 중도금대출 보증료 할인 안내

☐ 보증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
☐ 기본 보증료율(단일요율) : 0.13%

☐ 보증료 할인안내 (중복할인 불가능,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 매뉴얼 기준)

| 할인 대상 | 내 용 | 필요 서류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저소득 (40%) |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| 본인과 배우자 소득자료 1.근로소득원천징수 2.소득금액증명원 3.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4.소득이없을경우 : 사실증명서(소득이없음증명) |
| 다자녀 (40%) |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|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
| 장애인 (40%) |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| 장애인 증명서 (본인이 아닐 경우 등본에 세대원 등록되어야함) |
| 고령자 노인부양가구 (40%) |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. | 주민등록등본 (노인부양가구의 경우 1년이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야 함) ※ 노인부양가구 : 직계존속 외 세대원 |
| 독거노인 (60%) | 보증신청인이 배우자,직계존비속,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만65세이상의 고령자 | 주민등록등본 |
| 신혼부부 (40%) |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,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(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)인 경우 |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, 본인/배우자의 소득자료 (대출실행일 기준) |
| 한부모가족 (60%) | 피보증인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| 한부모가족증명서 (구청,동주민센터,민원24(인터넷발급신청)) |
| 다문화가족 (40%) |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 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| 기본증명서(해당하는 자 기준) |
| 국가유공자 (40%) |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| 국가유공자확인원, 독립유공자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, 5.18민주유공자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확인원, 고엽제법적응대상확인원 (본인이 아닐경우 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야함) |
| 의사상자 (40%) |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「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의사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| 의사자 증서, 의사자 유족증, 의사상자 증서 (본인이 아닐경우 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야함) |
| 모범납세자 (10%) |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국세청표창 이상 수상한 자로서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료의 10%할인 | 모범납세자 증명서(우대기간이내, 1개월이내발급) -산업훈장, 산업포상, 대통령포창,국무총리표창, 기획재정부장관표창,국세청장표창 |